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 1. 개정이유

등록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제출자료 마련에 필요한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부처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정의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 변경등록 기한 추가부여(안 제9조)

- 1) 현행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용도 변경시 1개월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등록된 정보의 유해성 및 위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변경등록하고 6개월의 추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는 추가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 2) 제조·수입량 및 용도 변경시에도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기한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 승인기준 설정시 고용부 의견수렴  
(환경부령 제790호 안 제35조의2)**

- 1)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제도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에서, 승인심의된 정보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부처간 승인방법 등을 유사하게 정함
- 2) 향후 관련규정을 정할 때에도 환경부-고용노동부간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승인절차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정비(안 별표 7)**

-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각 부처별로 상이함에 따라 산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통합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음
- 2) 현행 분류 및 표시내용의 용어정의 등을 관계부처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함

**라.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안 별표 11)**

- 1) 2030년까지 등록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2) 등록이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등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

마. 법률 용어 정비사항 반영(안 제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41조·  
제45조·제46조·제52조·제54조 및 별지 서식 제2호·제5호의3·  
제6호·제10호·제12호·제28호·제29호·제32호)

-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 5. 2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알기쉽게  
수정
  - “함유된” → “들어있는”, “~에 한하여” → “~에 한정하여”, “아니한다”  
→ “않는다”, “하여야” → “해야”, “~은” → “~이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35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을 “해당하는”으로, “이를 함유한”을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7조제3호 중 “이를 함유한”을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을“(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중량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을 “들어있는 화학물질별 총량을”로,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를 “들어있는 화학물질별 총량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품내 함유된”을 “제품에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6조의 제목“(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을“(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록·보존하여야 하는”을 “기록·보존해야 하는”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록·보존하여야”를 “기록·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물질 또는 화약류”는“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스”는“을 “가스”란“으로,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스”는“을 “가스”란“으로,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고압가스”는”을 ““고압가스”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액체”는”을 “액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 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이 해당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별표 7 제2호아목 중 “혼합물”은“을 “혼합물”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액체”는“을 “액체”란“으로,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체”는“을 “고체”란“으로,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혼합물”은“을 “혼합물”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혼합물”은“을 “혼합물”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액체”는“을 “액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7 제2호하목 중 “고체”는“을 “고체”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유기과산화물”는”을 ““유기과산화물”란”으로,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경구·경피 또는 흡입노출에 대해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라목 중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구분 1, 구분 2 및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은”을 ““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은”을 ““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

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차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환경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물질”은“을 “물질”이란“으로,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 제3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1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5호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항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6항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제품 내에 함유된”을

“제품에 들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함유된”을 각각 “들어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함유된”을 “들어있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p> <p>1. ~ 5.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u>하여야</u> 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2. (생 략)</p> <p>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u>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 ----- ----- ----- ----- <u>제출해야</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해야</u> -----. <u>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lt;단서 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            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            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            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p> <p>1. ~ 7. (생략)</p> <p>8. 유해화학물질이 <u>함유된</u>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p> <p>9. · 10.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들어있는</u> -----            -----</p> <p>9. · 10.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            ⑤ (생략)</p> <p><u>&lt;신설&gt;</u></p>	<p>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u></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            질안전정보 자료는 <u>해당</u> 화학물            질 또는 <u>이를</u>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            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u>제            공하여야</u> 한다.</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해당하는</u> -----            ----- <u>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            는</u> -----            ----- <u>제            공해야</u>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략)</p> <p>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p> <p>4. (생략)</p> <p>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 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1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중량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u>아니한다</u>.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p>	<p>----- ----- ----- <u>않는다.</u> ----- -----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생략)</p>	<p>제46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u>함유된</u>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u>제공하여야</u> 한다.</p>	<p>② ----- ----- ----- <u>들어있는</u> ----- ----- -----. ----- ----- ----- ----- ----- ----- <u>제공해야</u>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p>	<p>제52조(출입·검사) ① -----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p>	<p>4. -----</p>

현행	개정안
<p>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 확인 및 제품에 <u>함유된</u>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p>	<p>----- ----- <u>들어있는</u> ----- ----- -----</p>
<p>5. (생략) ② (생략)</p>	<p>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u>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u>기록·보존하여야 한다</u>.</p>	<p>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 -----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 <u>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 ----- ----- 기록·보존하여야 -----.</p>
<p>1. 삭제 2. ~ 3. (생략)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u>함유된</u>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p>	<p>2. ~ 3. (현행과 같음) 4. ----- -- <u>들어있는</u> ----- -----</p>
<p>5.·6. 삭제 7.·8. (생략) ② (생략)</p>	<p>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 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이 해당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 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

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

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 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0,000원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항목	⑱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고 분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 동 제 출	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 성 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㉒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 ] 제조 [ ] 신규 [ ] 등록 [ ] 수입 [ ] 기존 [ ] 개별제출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공동제출 [ ] 변경등록 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6쪽 참조	수수료 제6쪽 참조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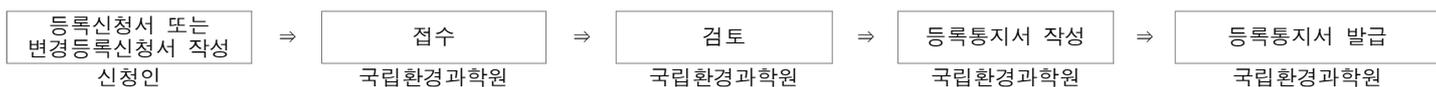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 신청서 1부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각 1부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	등록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⑯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7.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⑦란~⑩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⑫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⑬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⑭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11. ⑮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⑰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13. ⑱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14. ⑳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15. ㉑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16. ㉒란의 자료첨부 여부에는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시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이 생략되어 시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⑲란~㉑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7. ㉓란의 등록의 형태에는 ⑤란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규화학물질

제조     신고서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_____)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_____ / 팩스번호: _____)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적/전문적 용도 ( _____ )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용도 ( _____ )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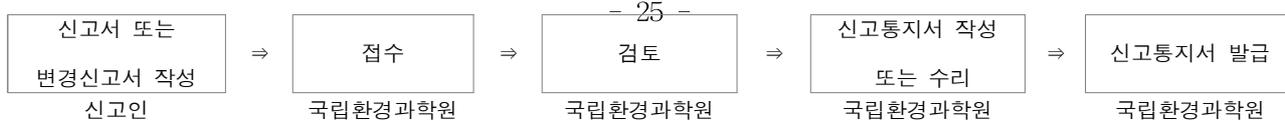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⑥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⑨란~⑬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제 조    화학물질     등 록    면제확인     신청서  
 수 입     신고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⑬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신청  
 수입     신고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다.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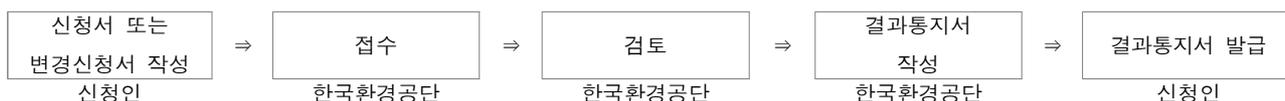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⑧란 ~ ⑩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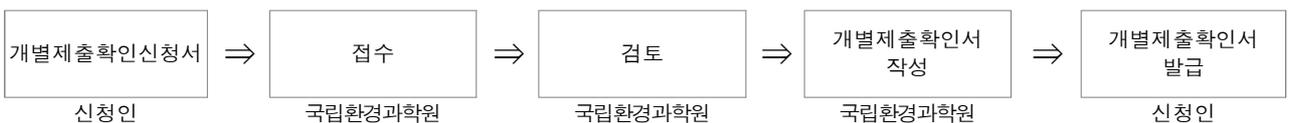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li> <li>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li> <li>4.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li> </ol>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4. ④란 ~ ⑩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②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③ 분자식·구조식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⑥ 용도분류체계				
	⑦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 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 상호(명칭)	⑫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대표자	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 수입국

⑯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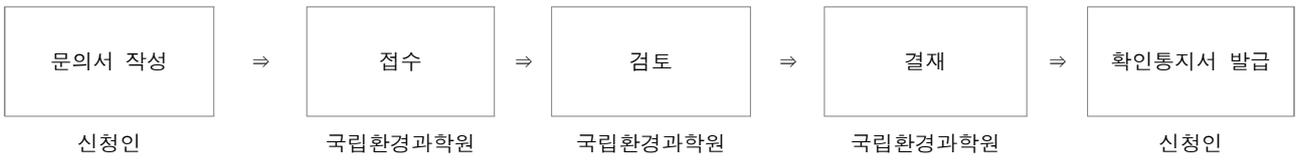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①전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 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⑥제품에 들어있 는 중점관리물질 함 량(%)	⑦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상호(명칭)	⑨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대표자	⑪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수입량(톤)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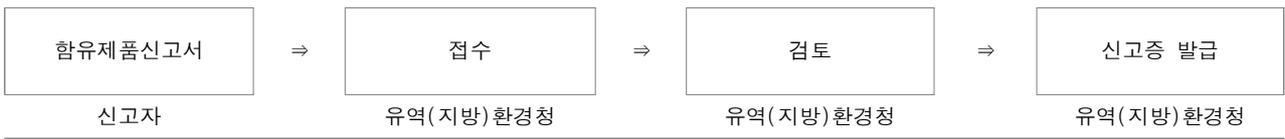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에 들어있는**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⑦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⑦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④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6. ⑤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7. ⑥란은 하나의 제품 내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습니다.
8. ⑦란은 하나의 제품에 **들어있는**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9. ⑧란 ~ ⑩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⑩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10. ⑭란은 신고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제 호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역) 환경 청 장

직인

[ ] 제품 양수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 ] 일반 소비자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 품 정 보	제품명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 학물질 식별번호)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사 용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